

울산지방법원 2023. 8. 18 선고 2021가단865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케이

담당변호사 이무룡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무

변 론 종 결 2023. 6. 2.

판 결 선 고 2023. 8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4,83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 요지

무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‘죽은 신랑이 해갈을 많이 놓는다, 신랑을 달래야 한다, 친정 쪽에 닻을 신명이 아무도 없다, 동생에게 대신 할머니가 들어가 있다, 그 할머니를 뺏어와야 한다, 맞이 곳을 해라, 동생이 너 때문에 아프다, 동생 천도를 하여 달래주라, 큰 아들도 그렇다, 큰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있다, 할아버지를 빼내 와야 한다, 큰아들에게 사자가 따라다닌다, 잘못하면 큰일 난다, 터가 사람이 죽어 나가는 터다, 텃 곳을 해야 한다’는 등의 말을 하면서 원고의 가족들에게 해악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7회에 걸쳐 곳을 하도록 종용하였는바,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길흉화복에 대한 곳 행위의 통상 범주를 훨씬 넘는 것이고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. 피고는 2021. 5. 15.경부터 2021. 7. 17.경까지 7회에 걸쳐서 원고로부터 합계 44,830,000원을 곳 값으로 교부받았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의 반환,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44,83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7회에 걸쳐서 곳을 하고 원고로부터 곳 값으로 44,830,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곳을 하도록 함으로써 곳 값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 하였다거나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대산